

서울교육대학교 전임교원 임용 규정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 4. 25.

서울 교육 대학교 총 장

전임교원 임용 규정 시행세칙

제	정	2003.05.12.
제1차	개정	2004.10.22.
제2차	개정	2004.12. 8.
제3차	개정	2008.06.17.
제4차	개정	2009.09. .
제5차	개정	2011.06.24.
제6차	개정	2016.05.16.
제7차	개정	2016.05.27.
제8차	개정	2017.03.28.
제9차	개정	2017.04.24.
제10차	개정	2018.04.02.
제11차	개정	2018.04.25.

제1장 목적과 기본원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교육대학교 전임교원임용규정 제7조에 의거 전임교원의 공개임용을 위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우수교수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①본교 교원의 공개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총장은 소속 교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결원에 대한 공개임용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2장 심사 절차와 방법

제3조(전형단계) ①전임 교원 임용 심사 절차는 제1단계와 제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단계 전형에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여 제2단계 심사를 실시한다.

②1단계에서는 서류심사, 연구실적물 양에 대한 심사, 기초 심사, 연구 실적 우수성 심사를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교육 및 연구 경력 심사, 학과 특성화 심사를 실시하여 3배수를 선발한 후 공개 강의 심사와 면접 심사를 실시한다.

제4조(서류 심사) ①지원서류 심사는 교원공개임용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관리위원회는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전임교원 자격심사조서 별지 1를 작성한다.

1. 응모자격 여부

가. 교육공무원법 제8조(교수 등의 자격) 해당자 여부

나.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물이 300% 이상인 자
다. 기타 모집요강에서 제시한 자격 적격 여부

2. 모집요강에서 제시한 제출서류 구비 여부

3. 모집분야 일치여부

③관리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부적격으로만 심사하되, 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기초 및 전공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제5조(기초심사) ①기초심사는 박사 학위(예술의 경우 석사 이상) 전공분야가 모집분야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로서 학과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②기초심사는 모집분야 전공일치여부 심사표 별지 2에 의거 적격·부적격으로 표시하되,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적격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적격자로 판정한다.

③기초심사에서 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전공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제5조의 2(연구 실적물 심사 : 10점) ①최근 4년 이내 발표한 연구 실적물을 대상으로 학과 심사위원 가운데 본교 소속 위원이 심사하며, 심사는 전공 일치도 심사를 통과한 연구 실적물에 한한다.

②전공 일치도는 일치·불일치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일치로 평가한 연구 실적물에 한한다.

③4년이 경과하지 않은 최종 학위논문은 심사에 포함하되, 최종 학위논문과 유사한 연구실적물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심사방법은 본교 '연구실적 심사규정 및 연구 실적 인정율[별표 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만, 예체능실기 분야의 경우에는 '연구실적 심사규정 및 연구실적 인정율' 50%, '예·체능 및 창작 실기계 심사기준[별표 2]' 50%씩 분할하여 환산할 수 있다. 이때 '예·체능 및 창작 실기계 심사기준'의 1점은 100%로 간주한다.

연구실적(%)	점수(점)	연구실적(%)	점수(점)
200이상~250	3점	401~450	7점
251~300	4점	451~500	8점
301~350	5점	501~550	9점
351~400	6점	551~600이상	10점

제6조(연구 실적 우수성 심사 : 30점) ①제4조의2의 연구실적물 심사에서 전공 일치도 심사를 통과한 실적물 중 최종학위 논문을 제외한 200%의 연구실적을 통합하여 연구실적 우수성을 심사한다. 이 때 200%의 연구실적 인정률은 [별표 3]에 따른다.

②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이 포함된 학과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③심사방법은 연구실적 심사표 별지 3에 의거 평가한 후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득점으로 한다.

④모집분야가 예술·체육실기 분야의 경우에는 예술·체육 실기 실적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때, 학과심사위원회(외부위원 제외)는 실기 실적 평가항목 및 심사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연구 경력 심사 : 10점) ①학과 심사위원 중 해당학과 교수가 심사하며, 심사 사항은 교육 및 연구 경력에 대하여 심사한다.

②심사 방법은 교육 및 연구경력 심사 기준표 별표 1에 의거 심사한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시간강사, 사회교육원, 계절제, 통신교육 등 대학의 정규교과 이외의 시간강사 경력은 환산 경력에서 제외한다.

③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계산한다. 다만, 시간 강사 경력은 해당 학기의 강의 시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④경력기간 산출에 있어 임용일은 포함하고 퇴직일은 제외한다. 다만, 3월 미만의 경력증명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학 시간 강사의 경우에는 이를 학기 단위로 계산한다.

⑤경력기간은 년, 월, 일까지 계산하고 계산방법은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되, 일 단위 계산에는 모든 월(月)을 30일로 계산한다.

- ⑥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년, 월, 일까지 산출한다.
- ⑦환산율이 100%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 ⑧환산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최종 계산에서 일 단위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1년은 12월,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⑨합산된 총 경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총 경력연수	배점/10	총 경력연수	배점/10
3년 미만	0점	3년 이상 4년 미만	3점
4년 이상 5년 미만	4점	5년 이상 6년 미만	5점
6년 이상 7년 미만	6점	7년 이상 8년 미만	7점
8년 이상 9년 미만	8점	9년 이상 10년 미만	9점
10년 이상	10점	*	*

제8조(연구실적물 심사 : 10점) <삭제>

제9조(학과특성화 심사 : 20점) ①학과의 특성에 따라 다음에 예시한 평가항목들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총 20점 범위 안에서 학과별로 자체기준을 정하여 심사한다.

가. 모집분야와 학위의 일치도 평가

나. 전공시험(실기능력 심사 포함)

다. 외국어 시험

라. 기타 학과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평가항목

②학과심사위원회는 학문의 우수성 평가에 관한 항목만 심사하며, 그 외 평가항목은 학과심사위원 중 해당 학과 교수 위원으로 구성된 자가 심사한다.

③학과장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각 모집분야별로 2종목 이상의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각 평가항목의 배점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점시 각 평가 항목 당 최고 15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공개강의 심사 : 20점) ①공개강의 심사 대상자는 지원자에 대한 연구실적 우수성 심사, 교육 및 연구경력 심사, 연구실적심사, 학과별 특성화 평가항목 심사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②공개강의 심사는 공개강의의 교수내용, 교수방법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③공개강의 심사 방법은 공개강의심사표 별지 4에 의거 평가한 후,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득점으로 한다.

④공개강의 심사 시 해당 학과의 대학(원)생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면접심사 : 10점) ①면접심사위원회는 공개강의 심사를 거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한다.

②면접심사는 교직자로서의 품성과 교육관, 학자로서의 발전 전망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③면접심사는 심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심사표 별지 5에 의거 평가한 후,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득점으로 한다.

④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대상자가 면접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처리하고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제3장 합격자 결정 및 기타

제12조(합격자 결정) 총장은 1단계 심사결과와 2단계 심사결과를 합산한 점수를 참작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 한다.

제13조(보칙) ①각 평가항목 심사시 기준일은 서류접수 마감일로 한다.

②각 평가항목 심사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공개강의 심사 대상자 선정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를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며, 면접심사 대상자 추천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 우선 순위는 초·중·등 교육 경력이 많은 자, 연구실적의 내용이 우수한자, 연구실적물 양(量)이 많은 자 순으로 추천한다.

④공개강의 및 면접 심사의 경우 지원자가 심사 대상 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자 전체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⑤총장은 모집분야의 지원자가 2배수 이하이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초빙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또한, 3배수 이상이 지원했다하더라도 총장은 모집분야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⑥각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를 하기 전까지 서약서(별지 6)를 제출 받는다.

⑦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이 요청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일부 반환할 수 있다.

⑧총장은 교수 공개 임용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전형기준의 폐지) 이 시행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구 서울교육대학교 전임교수 공개전형 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세칙 개정 이전에 신임 교수 임용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2003. 5. 12. 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3)

이 세칙은 200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8.06.16.)

부 칙(5)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9.09. .)

부 칙(6)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1.06.24.)

부 칙(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6.05.16)

부 칙(8)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6.05.27)

부 칙(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7.03.28.)

부 칙(10)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7.04.24.)

부 칙(11)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8.04.02.)

부 칙(12)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8.04.25.)

[별표 1]

교육 및 연구경력 심사기준

구 분	경 력 내 용	환 산 인정율
교육경력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0%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	50%
	대학 또는 전문 대학 시간강사 ◦ 강의 기간 계산은 학기 단위로 위촉된 경우만 인정한다. ◦ 강의 시간은 10시간 이상을 100%로 하고, 그 이하는 비율에 따라 적용하며, 4시간 이하는 50%로 환산한다.	비율에 따라 적용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하는 경우	100%
	대학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또는 공인된 체육단체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경력	50%
연구경력	석사과정(모집 공고일 현재 학위 취득자)	2년
	박사과정(모집 공고일 현재 학위 취득자)	3년
	최종학위과정 수료자 등 : 재학연수×0.7 (단, 재학연수는 학위 취득시의 인정연수를 초과하지 못함.)	삭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행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경력	100%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0%
산업체등 근무경력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하였거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60%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	공과계열 대학 졸업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50%
	상과계열 졸업자로서 민간 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50%
	신문학과 계열 졸업자로서 언론기관에서 기사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	50%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 분야에 따라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50%
자격증소지자등의 근무경력	판·검사로 근무한 경력	70%
	변호사 개업기간	70%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토지평가사, 변리사 개업기간	50%
기 타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 간부	50%

※ 본 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의 최소 환산율을 적용한다.

[별표 2]

예·체능 및 창작 실기계 심사 기준

분 야 별	연 구 업(실) 적			평 점
1. 미술	개인전	국외 공인된 개인전		1.5
		국내 공인된 개인전		1
	단체전	국외 공인된 2인전		0.8
		국내 공인된 2인전		0.7
		단체가 기획한 개인 부스전		0.6
		공인된 기관의 국제전 및 초대전		0.5
		공인된 국내의 초대전, 법인주최 및 전국단위 단체전, 회원전		0.3
		공모전	공인된 국제전	특선 이상 1회
	입선 1회			0.5
	공인된 국내전		특선 이상 1회	0.5
			입선 1회	0.3
	심 사	공인된 국제전의 심사위원(1회)		1
		공인된 국내전의 심사위원(1회)		0.6
2. 음악	가.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독주회·개인 작곡 발표회, 협주곡 협연(전악장), 오페라 주역			1점
	나. 공인된 Duo 또는 2인 연주회, 반주(전 프로그램)			0.7점
	다. 공인된 5인 미만의 발표회			0.5점
3. 체육	가.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연구 발표회 : 1회			1점
	나. 올림픽 경기 출신			1점
	다. 전국대회 입상 : 2회			1점
	라. 국제공인 심판 자격 : 1회			1점
	마. 공인된 체육지도자연구회 강사 50시간			1점
4. 창작실기 활동	가.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			1점
	나.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2회			1점
5. 기타	학·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 분야의 훈장 1회			2점

[별표 3]

연구실적 인정률

실적내용	구 분	인정률(%)	
		단독	공동
연구논문	공인된 국제학술지 I (SCI, A&HCI, SSCI, SCIE급)	200	연구책임자(제1저자·교신저자)의 경우는 단독의 $2/(n+1)$, 공동참여자의 경우는 단독의 $1/(n+1)$. 총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n=10$ 으로 산정함. (n =참여자 수)
	공인된 국제학술지 II (SCOPUS급)	15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100	
	박사학위 논문	200	
저 서	국제 전문서적(해외출판)	150	
	국내 전문서적-초판	120	
	초·중등 교과용도서 - 초판	100	
	전문서적 편저	100	
번역서 및 편역서	전문서적 번역서	100	
	전문서적 편역서	80	

전임교원 자격 심사 조서

모집분야 :

심사자 :

(인)

[illegible]

[별지 2]

모집분야 전공일치 여부 심사표

모집분야 :

심사자 :

(인)

[illegible]

[별지 3]

연구실적 심사표

서울교육대학교

학과		모집분야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일		
평가항목					
논문의 우수성 심사	연구논문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연구내용의 논리성				
	연구결과의 현장 적합성				
계(배점 만점 : 30점)				점	
심사의견					
심사위원	▪ 직위 : ▪ 직급 : ▪ 성명 : (인)				

[별지 4]

공개강의 심사표

서울교육대학교

학 과		모집분야		접수번호	
성 명			생년월일		
평 가 항 목			4.0점 (6.0)	3.0점 (4.5)	2.0점 (3.0)
			1점 (1.5)	0점 (0)	
강의준비(4점)	강의계획과 강의자료의 충실성 등				
강의내용(6점)	강의내용의 체계성, 강의 내용의 심도, 관련 지식수준 등				
강의방법 및 태도(6점)	강의기술, 발음, 몸가짐, 자신감 등				
강의관리(4점)	시간배분, 학습의욕 고취, 이해도 확인, 질의 응답 등				
계 (배점 만점 : 20점)			점		
심사의견					
심사위원	▪ 직위 : ▪ 직급 : ▪ 성명 : (인)				

[별지 5]

면접심사표

서울교육대학교

학과		모집분야		접수번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 번호				
	최종학력								
	현근무처								
심사내용	평가항목	2.0	1.5	1.0	0.5	0			
	초등교육 및 교대에 대한 관심과 이해								
	교직자로서의 품성과 교육관								
	학자로서의 발전 전망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과 협조성								
	면접태도와 표현력								
계(배점 만점 : 10점)				점					
심사의견									
심사위원	▪ 직위 : ▪ 직급 : ▪ 성명 : (인)								

[별지 6]

서 약 서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위 본인은 서울교육대학교 전임교원 공개 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임교원 공개 임용의 모든 절차에 있어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업무수행 중에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심사 대상인 전임교원 공개 임용 지원자와 최종학위논문 지도교수, 제출된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 또는 공동집필의 관계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 회피(제척) 제도에 따라 즉시 교무처에 신고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그 외 관련 법령에 의거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인 :

(인)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귀하